



규정

산학협동 운영 규정

문서번호 TWP-A603

제정일자 1996. 08. 14.

개정일자 2025. 03. 27.


개정번호 5 페이지 1/7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산학협동조정위원회
- 제3장 산학협력협의회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산학입학처	제정일자	1996. 08. 14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부총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3
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산학협동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3. 27.
		개정번호	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동원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03.27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산학협력활동”이라 함은 대학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25.03.27.>

1.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
2.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
3.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

② “산학협력연계교육”이라 함은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업·상업과 그 밖의 산업체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시키는 교육을 말한다. <개정 2025.03.27.>

제3조(업무분담)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관련 업무는 산학입학처가 담당하며, 산학협력활동과 산학협력연계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동조정위원회와 각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를 둔다. <개정 2017.01.26., 2025.03.27.>


제4조(업무지원) 산학입학처는 산학협력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5.03.27.>

1. 산학협력활동 연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산업체 현황조사 및 산학협력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
3. 산학협동조정위원회 및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
4. 산학협력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조달
5. 그 밖에 산학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전공업무) <삭제 2025.03.27.>

제2장 산학협동조정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) 대학은 산업체와의 산학협력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 산학협동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5.03.27.>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3
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산학협동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25. 03. 27.
		개정번호	5

제7조(조정위원회 구성) ① 조정위원회는 산학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촉 위원 등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01.26., 2025.03.27.>

② 위원장은 산학입학처장으로 하고, 산학입학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.

제8조(조정위원회 기능)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.<개정 2025.03.27.>

1. 산학협력활동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부 또는 학과 산학협력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의 산업체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활동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활동 운영 성과평가 및 차년도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산학협력활동 활성화 및 산학협력연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장 산학협력협의회

제9조(산학협력협의회 조직) ① 대학은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회사와 공동으로 산학협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1.26., 2025.03.27.>

② <삭제 2025.03.27.>

③ <삭제 2017.01.26.>

④ <삭제 2017.01.26.>


⑤ <삭제 2017.01.26.>

⑥ <삭제 2017.01.26.>

제10조(회의) <삭제 2025.03.27.>

제11조(공동추진사업) 협의회는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. <개정 2025.03.27.>

1.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동 연구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3. 산업체의 대학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
4. 산·학 간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확대 협조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
6.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 및 대학 수탁교육에 관한 사항

	규정		문서번호	TWP-A603
			제정일자	1996. 08. 14.
	산학협동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5. 03. 27.
			개정번호	5

7. 그 밖에 산학협력활동 및 산학협력연계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소요예산의 충당) <삭제 2025.03.27.>

제13조(보칙) <삭제 2025.03.27.>

제4장 <삭제 2025.03.27.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P-A603	
			제정일자	1996. 08. 14.	
	산학협동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5. 03. 27.	
			개정번호	5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별첨

- 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- [별지 제2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- [별지 제3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- [별지 제4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2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3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

[별지 제4호 서식]<삭제 2017.01.26.>